

# Immigration Guidebook

for Foreign Students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길잡이



# 인사말

세계는 지금 국가간 인적 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국경없는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수한 인재가 일류국가로 가는 성장동력이며,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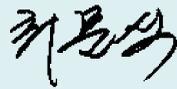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17만 여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그중 외국인 유학생은 8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체류외국인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새로이 발간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길잡이’는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들이 출입국관리 법규를 알지 못해 겪는 불편이 없도록 사증발급 및 각종 체류허가와 관련한 규정과 절차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외국인 유학생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고 편안한 한국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고, 대학에서 이들을 직접 지원해 주시는 담당자들에게도 유익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큰 보람과 진승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 CONTENTS

## I. 사증발급

- |                 |    |
|-----------------|----|
| 1. 유학(D-2) 사증   | 04 |
| 2. 일반연수(D-4) 사증 | 06 |

## II. 체류관리

- |                |    |
|----------------|----|
| 1. 체류업무 일반사항   | 08 |
| 2. 외국인유학생 등 관리 | 11 |
| 3. 체류기간연장 허가   | 13 |
| 4.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 16 |
| 5. 체류자격변경 허가   | 20 |
| 6. 근무처변경·추가 허가 | 24 |

## III. 기타 행정사항

- |            |    |
|------------|----|
| 1. 안내사항    | 25 |
| 2. 기타 참고자료 | 26 |

# I. 사증발급

## 1. 유학(D-2) 사증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아간 대학원 포함)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가. 사증발급절차

- 1)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중국 등 4개국은 제외)
  - 입학허가서 신청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사증발급신청(재외공관, 본인 신청) → 사증발급 → 입국
    - ※ 체류기간 2년 이내, 유효기간 2년의 유학(D-2) 복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 2)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중국, 쿠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 입학허가서 신청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신청인(본인 또는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사증발급인정서(번호)발급 → 사증발급 신청(재외공관) → 사증발급 → 입국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초청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 또는 대학의장이 지정하는 유학생 관리부서의 장 명의로 신청가능

### 나. 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여권(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여권사본)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반명함 사진 2장(3.5cm×4.5cm) 필요함(프린트된 사진은 사용 불가)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사본(고유번호증 사본)
- 수수료(단수: 미화 50달러 상당금액, 복수: 미화 80달러 상당 금액, 독일 면제)
  -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 1)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는 경우

-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 수험능력 및 재정능력심사 결정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예금 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미화 1만불 이상) 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1만불 이상)
-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교환 학생에 한함)
- 전 가족이 기재된 호구부 및 거민증 사본(중국인만 해당)
  - ※ 정부초청 장학생의 경우는 공통 제출서류와 표준입국허가서, 최종 학력증명서 등 2종으로 간소화

####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연구 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최종 학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 단, 해외입양인은 신원보증서 제출 면제(체류기간 연장 시는 제출)

## 다. 사증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야간대학원은 유학(D-2) 사증발급 대상이나 야간대학 및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대상이 아님
- 중국, 쿠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인의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하고 기타국가는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
-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발급 대상임
  - 국내에 부모, 친척이 있는 경우 :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 국내에 후원자(개인, 단체)가 있는 경우 : 일반연수(D-4) 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기술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으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는 연구(E-3)사증 대상임

## 2. 일반연수(D-4) 사증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 가. 사증발급절차

- 1)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중국, 쿠바 제외)
  - 유학(D-2) 신청절차와 동일
    -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종합(C-3) 자격에 해당
    - ※ 대학부설어학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한국어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 2)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신청서 신청(중국, 쿠바)

- 유학(D-2) 신청절차와 동일
  - ※ 단, 초청단체 대표가 아닌 교직원 이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D-2도 동일)

### 나. 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신청서) 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여권(사증발급신청서 신청 시에는 여권사본)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신청신청서
  - 사증발급신청서 신청 시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반명함판 사진 2장(3.5cm×4.5cm) 필요함(프린트된 사진은 사용 불가)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사본(고유번호증 사본)
- 수수료(단수사증: 미화 50불 상당금액, 복수사증: 미화 80불 상당금액)
  - 단, 사증발급신청서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 1)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D-4-1)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D-4-2)의 경우
  -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 수험능력 및 재정능력심사 결정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서류(교환학생에 한함)
  - 재정입증 관계서류
    - 예금 잔고 증명서 또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3,000불 이상)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전 가족 기재된 호구부 및 거민증 사본(중국인만 해당)

## II. 체류관리

### 1. 체류업무 일반사항

#### 가.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는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여권, 컬러반명함판 사진 1장, 수수료(정부수입인지 1만원)
-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14일 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함

- 여권, 컬러반명함판 사진 1장, 분실사유서
-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나. 체류지 변경신고(법 제36조)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군·구청 또는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여권, 컬러명함판 사진 1장, 분실사유서
- 신청서 (별지34호 통합서식)

#### 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35조)

등록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 유학(D-2)또는 일반연수(D-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학교 변경의 경우
  - 새로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표준입학허가서 및 등록금납입 영수증
  - 前 학교의 제적증명서(중국은 변경전 학교의 출석률이 표시된 재학증명서)

#### 라. 외국인등록증 반납(법 제37조)

- 등록외국인이 체류허가기간 내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하는 공·항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함
- 등록외국인이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인·배우자·부모 또는 초청인, 기타관계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마. 재입국허가(법 제30조)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하기 전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재입국 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여야 함

- 재입국허가 기간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재입국허가기간 내 수회 출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함(단 D-8, F-2는 공항만사무소에서 복수재입국허가 가능)

●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수수료 면제(2010.02.01부터 외국인유학생 면제조치)

-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 내 입국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60일까지 재입국허가기간 연장이 가능함
- 만일 부주의 등으로 재입국허가 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는 다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바. 벌칙규정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각종 신고 및 허가 미필 시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
  - 과태료 처분 대상 법 규정
  - 법 제19조의 4(외국인 유학생 등의 관리 의무 등) 위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35조(학교변경 등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범칙금 처분 대상 법 규정
- 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위반
  - 범칙금 1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위반
  - 범칙금 1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위반
  - 범칙금 1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법 제31조(외국인등록) 위반
  - 범칙금 2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 위반
  - 범칙금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외국인 유학생 등 관리

가. 학교 등의 장의 의무(법 제19조의4)

1) 담당직원 지정 및 통보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또한 담당 직원 교체 시에도 즉시 그 교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통보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정 또는 변경된 담당직원 통보(등재)

2) 외국인유학생 변동사유 발생 신고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거나 휴학을 한 때(입학허가를 받고 미입국한 경우, 입국 후 미등록한 경우도 신고 대상임)
-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정상 수료하거나 졸업한자도 포함)

● 신고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연수(유학)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3)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및 상담(시행령 제24조의8호)

가) 외국인유학생의 학사정보·현황의 관리 및 통보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각종 학사정보를 관리하고, 그 정보를 매 학기 시작 3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등재)하여야 함

- 각종 학사정보에는 유학생의 학과, 학번, 출석률, 취득학점, 성적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학사정보 항목은 유학생정보시스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름

- 다만, 각종 학사정보 중 “학점 및 성적사항”은 학위과정 이상 유학생의 정보만을 매년 2월 및 8월 말일까지(연 2회), “출결사항”은 어학연수과정 연수생의 정보만을 연수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통보(등재)하여야 함(논문 준비 등의 대학원 수료자는 학점·성적사항, 출결사항 정보 입력 불요)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정별(전문학사, 학사 등), 유학중단사유별(미입학, 자퇴, 휴학, 제적 등) 등의 현황을 매년 2월·5월·8월·11월 말일까지(연 4회)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통보방식

- 유학생정보시스템상에 학사정보 및 현황 통보(등재)

나) 외국인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담 및 현황 통보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에 대해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상담현황을 유지하여야 함

- 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소속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상담현황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해 공동 노력하여야 함

● 통보방식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요청 시 현황제출(양식붙임)

나. 기타사항

- 위 내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유학생정보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처리

- 유학 가능 체류자격: 외교(A-1)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유학(D-2), 취재(D-5)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내지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내지 영주(F-5), 방문취업(H-2)

-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 합법 체류자(체류자격 불문)

3. 체류기간연장허가(법 제25조)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보통 체류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음

가. 유학(D-2)자격 해당자

### 1) 공통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수수료(정부수입인지 3만원)

### 2) 일반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 등), 특정연구생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연구 활동 입증서류
-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
- 성적증명서

### 3) 정규 학위과정 수료 후 논문 준비 중인 외국인

- 정상적으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정상적인 노력에도 논문심사 통과를 못한 자로 지도교수로부터 해당 유학생에 대한 논문지도과정과 향후 심사 일정, 추천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추천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장 허가
- 정규과정 수료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시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은 2년 범위 내에서 부여하고 이후 석사과정은 매1회 6개월 범위 내, 박사과정은 매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허가

#### 제출서류

- 지도교수추천서(논문지도과정, 향후 심사일정, 추천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단, 정부초청장학생은 국제교육진흥원 발급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확인서 [장학금 지급기간(최장1년) 연장허가]로 가능함

### 4) 졸업 후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 평균학점 3.0 이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중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자. 단, 인문계 학사학위 취득자는 특정활동(E-7) 자격변경 허용 12개 직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전공자로 한정
- 석사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자
- 허가기간 : 6개월 범위 내(D-2자격 유지)

####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학위자)
- 추천서 및 사유서

### 5) 체류기간연장 허가의 제한

다음의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학비 등 체재비를 국내 취업활동으로 조달하려는 외국인
- 학업보다 취업활동을 주로 하는 외국인
- 수업부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휴학한 외국인(가사휴학 불인정)
-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외국인  
단,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 나. D-4(일반연수)자격 해당자

#### 1) 공통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수수료(정부수입인지 3만원)

## 2) 대학부설 한국어 연수(D-4-1)

- 재학증명서(출석사항 및 연수일정 기재)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
  - ※ 체재비입증서류란 대한민국 내에서 인출 가능한 은행잔고증명, 은행통장 등 최소 300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를 요함

## 3)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제한

다음의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한국어 연수 등 어학연수와 교육기관이외의 종교단체 등의 부설연수원 등에서의 연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 1회 6개월 이내 연장허가
- 2년을 초과하여 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연장 허용
- 빈번 결석, 불법취업 우려,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연수하고자 하는 경우 정밀심사 및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할 수 있음

## 4. 체류자격외활동허가(법 제20조)

해당 체류자격과 병행하여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가. 유학(D-2)자격 해당자(시간제취업 '아르바이트')

#### 1) 대상

지도교수(전임강사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 유학(D-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한 학기 이상 수학과정을 마친 자
  - 단, 재학 중인 대학 내에서 학업과 연구가 병행되는 연구 프로젝트, 강의 조교(일시적), 실험조교 등 정식 취업이 아닌 한시적·일시적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재학기간에 관계없이 허용
  - ※ 다른 체류자격에서 유학(D-2)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자는 시간제 취업허가 시 체류자격변경 직전의 어학연수 또는 체류기간을 정규학위 과정 이수기간으로 간주
- 정규학위(석·박사 포함)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준비 중에 있는 자

## 2) 허용범위

### 취업 허용시간 및 기간

-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단, 공휴일(토요일포함) 및 방학 중 무제한)
- 원 아르바이트 장소 등 2개 장소(근무처)로 한정
-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1년간 허용(계속 연장가능)
  - ※ 석·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준비 중인 자의 경우도 동일
  - ※ 학교에 학기등록을 계속하는 경우

### ■ 취업 허용분야

-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직종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 보조요원 등 활동
  -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 취업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
  - ※ 각 분야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수수료(정부수입인지 1만원)
  - ※ 단, 한국계외국인(입증서류 제출자)은 수수료 면제
- 지도교수의 추천서(논문준비 중인 자 포함)

- 일반적인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
- 지도교수의 추천서(표준 통합 양식)
- 회화강사로 활동하는 경우(시간제 취업)
- 정규학위(석·박사포함)과정에 재학 중인 자
- 정규학위(석·박사포함)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준비 중인 자
- 회화지도(E-2)강사의 요건을 갖춘 자

- 재학증명서
- 고용계약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위증 및 봉인된 성적증명서(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
  - ※ 회화지도(E-2)강사의 자격요건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 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채용신체검사서 원본(HIV와 마약검사(TBPE) 포함 필수)

-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 조건 위반자 처리
- 1차 위반시 : 통고처분 후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 2차 위반시 : 통고처분 후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위반시 : 통고처분 후 유학자격 취소
  - ※ 단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전업형태로 취업하다 적발 된 경우는 일반불법취업자 처벌 기준에 따라 처리

#### 기타사항

- 여권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을 날인하여 허가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허가기간을 명시(외국인등록증 뒷면에도 기재)
- 허가기간 내에 고용주를 달리하여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장소를 옮길 경우에도 새로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나. 일반연수(D-4) 체류자격 해당자

- 1) 일반연수(D-4) 자격을 소지하고 대학부설어학원에서 연수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연수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입국일로부터 6개월(체류자격 불문)이 경과된 자
- 2) 기타 사항은 유학(D-2)자격 해당자와 동일

#### 다.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에 대한 자격외활동허가

- 1)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감) 주관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정부 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유학(D-2)자격을 소지한 대학생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으로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10년 이상 영어에 의한 정규 교육을 받은 후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한 자

#### 2)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합격통지서(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 교육감 발급)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수료(정부수입인지 1만원)

## 5. 체류자격변경 허가(법 제24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학기 시작전에 반드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가. 유학(D-2) 및 일반연수(D-4)자격으로 변경

#### 1) 비유학 장기 체류자격에서 유학(D-2)자격으로 변경

- 야간대학, 각종 사이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제외
-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향선원(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제외
- ※ 외국인 유학생 및 여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 제정 관련(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1304, '08.6.12)에 따라 야간대학원 과정은 D-2 변경 가능

#### 2) 단기종합(C-3) 등에서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종합(C-3)자격 또는 사증면제(B-1)로 입국한 자로,
  - 전문대학이상의 정규학위(석·박사 포함)과정에 진학하는 자
  - 대학부설어학연수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 하계학교 등에 입교하는 재외동포 자녀 등
- ※ 단, 단체관광사증(C-3)으로 입국한 중국인은 자격변경 불가

### ● 제출서류

유학(D-2)	여학연수(D-4-1)
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소지자)	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소지자)
②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②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③ 표준입학허가서: 수험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③ 표준입학허가서: 수험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④ 수수료(정부수입인지 5만원)	④ 수수료(정부수입인지 5만원)
⑤ 등록금납입증명서	⑤ 등록금납입영수증
⑥ 최종학력증명서(필요시)	⑦ 호구부(중국인에 한함)

※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연수(D-4-1)자격으로 변경이 불가능함(단, 일본인은 항구적 무사증허용에 따라 가능)

### ■ 기타 확인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연수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 ■ 체류자격변경허가 제한(공통)

- 유학·연수비용 등 체재비를 국내 취업활동으로 조달하려는 외국인
- 학업보다 취업활동을 주로 하는 외국인
-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나.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교수(E-1), 연구(E-3),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경

- 국내에서 이공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에서 총(학)장의 추천이 있는 자
- 이공계 전공 유학생 중 7학기 이상(이공계전공 석·박사 과정은 3학기 이상)을 마친 자로서, 해당학교 총(학)장의 추천을 받고 공·사기관에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
- 국내에서 인문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에서 총(학)장의 추천이 있는

자, 단, 학사의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중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영업원 등 12개 직종만 한정하여 허용

- ※ 해당학위의 전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한 자로서 경력요건은 불요
-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지침 준용

#### 공통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별지 34호 통합서식)
- 졸업(예정)증명서, 총(학)장의 추천서, 사유서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수수료(정부수입인지 5만원)

#### 1) 교수(E-1) 자격으로의 변경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로서 해당 학위(이공계/인문계 석사 이상)의 전 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하고 총(학)장의 추천이 있는 자

##### ■ 제출서류

- 위 공통 제출서류

- ※ 국내에서 학위의 전 과정을 이수한자로서 경력요건은 불요

#### 2) 연구(E-3) 자격으로의 변경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이공계 전공자에 한함)

##### ■ 제출서류

- 위 공통 제출서류 및 연구기관 대상 업체 확인 관련서류

#### 3)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경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 발급지침 준용(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 등에 종사하는 자, 이공계·인문계 학사학위 이상자 중 요건해당자)

##### ■ 제출서류

- 위 공통 제출서류 및 사유서

#### 다. 유학(D-2)자격에서 일반연수(D-4) 자격으로의 변경

##### ● 대상

국내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 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취업하여 국내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졸업 전이라도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허용
- ※ 체재비를 초과하는 연수비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변경 제한

##### ● 연수장소

-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모기업 또는 외국 지사, 계열사
-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계열사

##### ● 체류기간 : 1년 범위 내(연수계획을 고려 체류기간 부여)

##### ● 제출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취업확인서류(재직증명서 등), 연수기관·취업기업 관계입증서류(해외직접투자신고서 등), 연구기관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연수계획서, 신원보증서

## 6. 근무처변경 · 추가 허가(법 제21조)

### 가. 근무처 변경허가

근무처변경은 원 근무처에서 맺은 계약으로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 고용이 해지되어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의 학교변경(명칭 변경 포함)의 경우는 등록사항변경신고 대상임

- 준비서류 : 입학허가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등

### 나. 근무처추가 허가

근무처추가는 원 근무처에서 맺은 계약으로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 원 근무처 외 다른 근무처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함

1)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자격은 근무처추가허가와 관련 해당사항 없음

## Ⅲ. 기타 행정사항

### 1. 안내사항

#### 일반정보 제공

- 출입국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람(각종 신청 서식 · 양식 등 포함)
  - 외국인을 위한 전자 정부 (<http://www.hikorea.go.kr>)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 출입국 외국인유학생 네트워크(<http://cafe.daum.net/immigrationts>)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 및 민원대표전화 1345 시행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던 이민행정콜센터가 2008. 3. 30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확대 개편되어, 출입국 민원대표전화 “1345”를 통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화민원안내를 담당하고 있음
- 60여명의 전문상담원이 표준화된 상담메뉴얼에 의거 17개 다국어로 민원 안내

#### 출입국민원대리인제 시행

- 외국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사무실 민원혼잡도 완화 차원에서 2008. 3. 10부터 출입국민원대리인제를 시행함
- 출입국민원대리인이라 함은 외국인을 고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단체(대

학 또는 업체)에 속한 직원으로, 소속 외국인의 출입국관련 민원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우리부에서 지정된 자를 의미함

- 지정된 출입국민원대리인은 사증발급신청서 신청 및 체류관련 민원업무 등 (조사 및 사범심사는 제외) 외국인 본인의 면담이 직접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업무에 한하여 대행 가능

## 2. 기타 참고자료

- 인문계 학사학위자 허용 특정활동(E-7) 직종 · 직업표
- 지도교수 추천서(표준 통합 양식)

### 인문계 학사학위자 허용 특정활동(E-7) 직종 · 직업표

연번	직종코드	직종명	세부직업
1	2122	사회과학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량경제학 연구원</li> <li>노동경제학 연구원</li> <li>농업경제학 연구원</li> <li>산업사회학 연구원</li> <li>조세경제학 연구원</li> <li>금융경제학 연구원</li> <li>재정학 연구원</li> </ul>
2	2733	국제(외국인)학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교사 · 교감 · 교장</li> <li>외국교육기관 교사 · 교감 · 교장</li> <li>국제고등학교 교사 · 교감 · 교장</li> </ul>
3	2742	법률관련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법률에 의한 변호사</li> <li>외국법률에 의한 변리사</li> </ul>
4	28331	정부행정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직 공무원</li> <li>계약직 지방공무원</li> </ul>
5	S620	특수기관 행정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한외국공관 행정 · 기능요원</li> <li>주한외국상공회의소 행정 · 기능요원</li> </ul>
6	2715	경영 및 진단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컨설턴트</li> <li>외국법률에 의한 회계사</li> </ul>
7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 및 신용분석가</li> <li>자산 운용가</li> <li>보험 및 금융상품 개발자</li> <li>증권 및 외환딜러</li> </ul>
8	2731	상품기획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상품기획자(상품개발 담당자)</li> <li>해외 마케팅 전문가(판촉기법 전문가)</li> </ul>
9	2732	여행상품 개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여행 기획자</li> <li>여행상품 개발원</li> </ul>
10	2742	해외영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영업원</li> <li>무역 영업원</li> <li>수출입 영업</li> </ul>
11	2812	번역가 · 통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번역가</li> <li>통역가</li> </ul>
12	28331	아나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나운서</li> </ul>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도교수 추천서

대상자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학과(전공)		이수학기	
	전화번호		e-mail	
취업예정 근무처	업체명		업종	
	주소			
	고용주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취업기간		급여(시급)	
	근무시간	평일 :		토 · 일요일 :
<p>위 유학생은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학습 및 연구 상황으로 볼 때, 상기 예정된 시간제취업 활동을 통해서 학업(또는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p>				
지도교수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유학생 담당자 확인란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성명	(인 또는 서명)



발행인 소장 최문식  
감 수 관리과장 이종욱  
기 획 이인숙  
편 집 홍성득, 남석진, 정장춘, 이화  
교 정 이상배, 김영민

# Immigration Guidebook

for Foreign Students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길잡이

2010년 4월 27일 인쇄  
2010년 4월 27일 발행

발행처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주 소 (우 158-07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동로 121(신정6동 319-2)  
전 화 국번없이 1345  
팩 스 [02]2650-6397  
홈페이지 <http://immigration.go.kr>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ttp://www.hikorea.go.kr>  
디자인·인쇄 디자인페이지 [02]2285-5278